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5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5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35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(금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9년도말 조성액 ㉑	2020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0년도말 조성액 (㉔=㉑+㉒-㉓)	증 감 (㉕=㉔-㉑)
		수입㉒	지출㉓		
재정안정화 기	0	3,738,000	0	3,738,000	3,738,000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가. 기금 개요

본 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,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구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고자 2019년에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되었음.

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설치 목적임

1) 재원조성

-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%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%를 초과하는 경우,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
-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2) 지원기준

-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일반회계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-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

-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 -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
 -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경우
 -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3) 지원대상 :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

나. 기금조성 및 운용

(표 1) 2020년도자금수지총괄 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지출 계획		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
전 입 금	3,738,000	0	예 치 금	3,738,000	0

2020년도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7억 3,800만원 예치임.

다. 검토 결과

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적립금을 예치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실효성 있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.

지방재정법

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재정안정화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

- ① 기금은 세계현금(세계현금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

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

-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-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-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(장)·관(관)·항(항)으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매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%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2.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%를 초과하는 경우,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

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④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며,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일반회계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4.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
5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경우
6.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②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